

의안번호	2204625
의 퇴 인	주호영 의원
회 답 일	2024. 11. 12.
추 계 번호	24C429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① 군복무크레딧 지원 기간을 확대할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64년부터 2073년까지 9조 6,301억원(연평균 9,630억원)으로 추계되고, ② 출산크레딧의 지원 기간을 확대할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45년부터 2054년까지 8,595억원(연평균 860억원)으로 추계됨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1): 2064~2073년

(단위: 억원)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안 제18조)	2064	2065	2066	2067	2068	합 계	연평균
	1,827	3,677	5,487	7,183	8,852		
	2069	2070	2071	2072	2073		
	10,530	12,158	13,806	15,505	17,275		

주: 1. 추계기간은 전망모형 상 개정안에 따른 크레딧 산입기간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2064년부터 2073년까지 10년으로 설정

2. 2024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2): 2045~2054년

(단위: 억원)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안 제19조)	2045	2046	2047	2048	2049	합 계	연평균
	11	37	135	365	595		
	2050	2051	2052	2053	2054		
	823	1,183	1,530	1,812	2,105		

주: 1. 추계기간은 전망모형 상 개정안에 따른 크레딧 산입기간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2046년부터 2055년까지 10년으로 설정

2. 2024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¹⁾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 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50%를 적용) ※(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50%를 적용)	의무규정
3	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경우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무제한) 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현행) 둘째 자녀 이상을 가진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자녀부터 추가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최대 50개월)	의무규정
4	안 제41조의2(정원·인건비 등 특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정원과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함	의무규정
5	안 제51조(기본연금액)	재정 계산과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작성 시 재정 계산을 수행한 시점으로부터 70년 동안 기금을 유지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시 이후 연금액 산정 시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전년도의 가입자 감소율, 전년도 평균 수명 증가율에 해당하는 비율을 뺀 값을 기준으로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뺀	의무규정
6	안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지역가입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상태에서 납부를 재개 하거나 지속 하고,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36개월 간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현행) 지역가입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상태에서 납부를 재개하는 사람 중 재산 및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에게 최대 12개월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 안 제88조에 따라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국민연금재정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 증가는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
3	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4	안 제41조의2(정원·인건비 등 특례)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안 제51조(기본연금액)	×	
6	안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3조의2, 제41조의2, 제51조, 제100조의4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추계가 곤란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

- (안 제41조의2)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정원과 인건비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고 별도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정원 확대 또는 인건비 인상 등의 조치가 수반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그 여부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음
- (안 제51조) 개정안에 따라 70년 동안 기금을 유지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개시 이후의 연금급여 인상률을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에 따라 조정하면 급여액 인상률 억제에 따라 급여지출이 감소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자동조정 발효 시점을 알 수 없음
 -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개혁안의 일부로 포함하면서, 발효 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

- (안 제100조의4)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기간을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및 종합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수와 이들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소득 정보, 대상자가 최대 36개월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 받게 될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

-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재산 및 종합소득 기준이 현행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의 기준²⁾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재산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지역가입자 중 특정 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 수를 알 수 없음

* 참고로, 현행 지역가입자 연구보험료 지원은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이 1,680만원 미만인 반면 재산이 6억원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상자의 재산은 대상자가 지원을 신청한 후에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확인이 가능

- 또한, 개정안은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설정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가입자 및 신규 지역가입자 각 개인의 향후 소득 변동을 예측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부재하여 개인별 평균 지원 기간 및 최대 36개월 지원 달성 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곤란

- (안 제3조의2) 안 제41조의2, 제51조, 제100조의4에 대한 추계가 곤란하여 개정안 시행 시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게 되는 시기와 그 필요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

□ 따라서, 본 추계서는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18조와 제19조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만 추계

- 본 비용추계의 대상은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에 따른 추가 산입 기간을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로, “개정안 기준 적용 시 총재정소요”에서 “현행 기준 적용 시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추계
 - 재정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³⁾을 활용하여 산출

2) 현행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 중에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이 1,68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6억원 미만인 자(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를 대상으로 함

3) 다음의 변수를 반영하여 자체구축한 모형: (인구변수) 202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 (거시경제변수)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2024년 9월 기준), (제도변수) 2023년 실적치까지의 과거 실적 추세와 각각의 추정에 적합한 수리적 모형 등을 고행하여 산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안 제88조의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하여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규정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
 - 다만, 추계기간은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각각 10년씩 제시하되, 재정수반요인별 추계기간이 상이하므로 각각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분리하여 제시
 - (군복무크레딧) 개정안 부칙은 법률 시행 이후 병역의무를 완료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법률 시행 시점인 2025년 평균 입대 연령(21세)인 가입자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획득이 가능한 시점(60세)에 도달하는 2064년부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출산크레딧) 개정안 부칙은 법률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법률 시행 시점인 2025년에 다섯째 이상을 출산한 사람이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는 시점(60세)에 도달하는 2045년부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 2025년에 다섯째 이상을 출산한 사람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을 순차적으로 획득하게 되는데, 2025년 다섯째 이상을 출산한 모(母, 출산 시 평균 연령 37세)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60세)가 되는 첫해는 2048년이며, 평균 3세 연상으로 가정된 배우자(父)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되는 첫해는 2045년이므로 2045년부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 시점

구 분		2025년 출산 순위				
		다섯째 이상	넷째	셋째	둘째	첫째
출산 연령(세)	모(母)	37	36	35	34	32
	부(父)	40	39	38	37	35
60세 도달 시점 (년)	모(母)	2048	2049	2050	2051	2053
	부(父)	2045	2046	2047	2048	2050

- 추계기간이 장기이고 연금급여가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지급되므로 2024년 기준 불변가격⁴⁾으로 제시

4) 불변가격은 GDP디플레이터(2024.9.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로 각 연도 발생금액을 나누어 산출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군복무크레딧 지원(안 제18조)

-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전망모형에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률과 사망률 및 장애발생률, 연령별 조기노령연금 수급률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노령연금 수급권자 수에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비율을 적용하여 대상자 수를 산출
 - 개정안에 따른 군복무크레딧 대상자는 현역병⁵⁾, 전환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며, 2025년부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개정규정 적용
 - (군 입대 연령) 2021년 현역병 평균 입대 연령인 21세 가정
 -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비율) 2010년 18세에서 시작하여 2021년 29세에 도달한 사람 중 군복무크레딧 대상이 되는 병역으로 입대한 사람 수(31.8만명⁶⁾)의 2021년 29세 남성 인구(39.4만명) 대비 비율(80.8%)을 산출하여 적용
- (병역의무 수행 기간) 2021년 말 기준 군 복무 중이거나 2021년 중도 귀가⁷⁾한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의 복무유형(복무기간)별 비중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연도별·복무유형별 대상자 수를 산출하고, 연도별·복무유형별 복무기간과 대상자 수를 가중평균하여 대상자 전체의 평균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산출
 - 현행법은 6개월 미만 복무자는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6개월 미만 복무자도 최소 1개월 이상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6개월 미만 복무자를 합하여 평균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산출

5) 징집병을 가리킴(장기복무로 전환하지 않고 제대한 학군장교 및 학사장교가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전체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대비 비율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려하지 않음)

6) 병무청 제출자료

7) 현행법은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도 모두 포함함

[표 4]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군복무 기간

(단위: 개월)

연 도	육군 등 ¹⁾	해군 등 ²⁾	공군	사회복무요원	평균 복무기간 ³⁾
2021	18	20	21	21	18.9

주: 1) 육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2) 해군, 해양경찰

3) 평균 복무기간은 유형별 군 복무기간과 유형별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추정치)를 가중평균한 복무기간을 가리킴

자료: 국방부, 병무청, 소방청,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1인당 평균 연금급여액)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노령연금액을 산출하되, 현행제도 유지 시 추가 산입기간은 6개월, 개정안 적용 시 추가 산입기간은 18.9개월이 적용됨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은 연령별, 가입기간별 소득지수를 적용하여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연금액을 산출하고,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64년부터 2073년까지 9조 6,301억원(연평균 9,630억원)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64~2073년

(단위: 억원)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안 제18조)	2064	2065	2066	2067	2068	합 계	연평균
	1,827	3,677	5,487	7,183	8,852		
	2069	2070	2071	2072	2073		
	10,530	12,158	13,806	15,505	17,275		

주: 1. 추계기간은 전망모형 상 개정안에 따른 크레딧 산입기간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2064년부터 2073년까지 10년으로 설정

2. 2024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출산크레딧 지원(안 제19조)

□ 출산 연령 및 출산크레딧 대상자에 관한 가정

- (출산 연령)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서 제시된 출산 순위별 모(母)의 평균 연령을 적용
 - 추계기간에는 2023년 기준 출산 순위별 모의 평균 연령이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⁸⁾
 - 2023년 출산 순위별 모(母)의 평균 연령: 첫째 32세, 둘째 34세, 셋째 35세, 넷째 36세, 다섯째 이상 37세
- (출산순위별 자녀 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⁹⁾의 0세 인구추계 결과를 적용하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서 제시된 2023년 기준 출생아의 출산순위별 비중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 2023년 출산순위별 출생아 비율: 첫째 60.2%, 둘째 32.3%, 셋째 6.2%, 넷째 1.0%, 다섯째 이상 0.3%
- (출산크레딧 대상자) 부모인 남성과 여성 수급자가 출산크레딧을 각각 50%씩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가정하고¹⁰⁾, 남성 수급자는 여성 수급자보다 연령이 3세 높은 것으로 가정¹¹⁾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통해 출산크레딧 대상자 수에 연령별 가입률, 종별이동률, 사망률 등을 적용하여 연금수급권자 수를 산출
 - 연금수급권자 중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기노령연금 수급률을 적용하여 해당자 수를 산출

□ 출산크레딧 적용을 위한 노령연금액 산정에 관한 가정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노령연금액을 산출

8) 최근 출산 순위별 모(母)의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해당 연령의 변동 추이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최근 연령 수준이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9) 2023년 12월 1일 공표 통계 자료를 사용

10) 「국민연금법」

제19조 <전략>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후략>

11) 통계청의 「2023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차이는 2.5세, 재혼연령 차이는 4.5세이므로 배우자의 평균 연령 차이를 그 평균값인 3세로 적용함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은 연령별, 가입기간별 소득지수를 적용하여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연금액을 산출하고,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출산크레딧 적용자는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연금액 산출 시 가입기간 산입에 따른 추가연금액이 산정됨
- 노령연금의 개시 연령은 65세이나,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개시 5세 전부터 수급이 가능하므로, 60세부터 연금수급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45년부터 2054년까지 8,595억원(연평균 860억원)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45~2054년

(단위: 억원)

	2045	2046	2047	2048	2049	합 계	연평균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안 제19조)	11	37	135	365	595	8,595	860
	2050	2051	2052	2053	2054		
	823	1,183	1,530	1,812	2,105		

주: 1. 추계기간은 전망모형 상 개정안에 따른 크레딧 산입기간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2046년부터 2055년까지 10년으로 설정

2. 2024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